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

발 의 자 : 정연욱 · 안상훈 · 서명옥
박성민 · 박성훈 · 서지영
이헌승 · 이종배 · 박정하
이성권 · 조경태 · 최보운
신성범 · 배현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누구든지”로,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이하 “부정구매”라 한다)
2.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판매”라 한다)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정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상의 기술적 조치
2. 부정판매 관련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의 판매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판매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신고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를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u>누구든지</u>----- ----- <u>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

<신 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이하 “부정구매”라 한다)

2.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판매”라 한다)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정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상의 기술적 조치
2. 부정판매 관련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신 설>

는 필요한 조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의 판매자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 설>

다.

제6조의4(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판매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신고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① -----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 · 2. (생략) <신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2. (생략) 제51조(몰수·추징) ① (생략)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u>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자</u>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49조의2(벌칙) -----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	--

<u>1. · 2.</u>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1. ~ 4.</u> (생략) 5. · 6. (생략) ③ ~ ⑤ (생략)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 ----- -----. <u>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2. ~ 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